

# 한국건축정책학회지 편집규정

2014년 00월 00일 제정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건축정책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학회지 명칭)

학회지의 명칭은 “한국건축정책연구(Journal of Architectural Policies)”라고 한다.

### 제 3조 (학회지 내용)

학회지의 내용은 다음 각 항에서 정의하는 논문,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로 구성한다.

1. 논문 : 건축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논평 : 연구논문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에세이형식을 갖춘 글
3. 리포트 : 국내외 건축정책이나 제도 도입을 소개하거나 해설하는 보고서 또는 제언 형식의 글
4. 서평 : 건축정책과 관련된 저술, 논문, 논평, 리포트에 대한 논평
5. 자료 : 건축정책 및 관련 분야의 문헌정보, 연구자료 소개

### 제 4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2장> 편집위원회

### 제 5조 (구성 및 선출)

1. 본 학회 회원 중에서 7인 이내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4.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6조 (편집위원장)

1.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논문심사, 게재원고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정 및 해결책임을 진다.

### 제 7조 (권한과 의무)

1.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 심사료 및 게재료 결

정의 권한을 갖는다.

2.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6.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제 3장> 학회지 투고

### 제 8조 (투고 자격)

1. 학회지에는 본 학회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은 투고 전까지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단,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원고일 경우에는 최소 1인 이상이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3.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9조 (투고 내용)

1. 투고 내용은 다른 일반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축정책 연구논문, 정책관련 논평, 정책관련 리포트, 정책관련 연구자료이어야 한다.
2. 제3조의 연구논문으로 투고된 원고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성과를 얻은 독창적인 내용의 학술연구로 한다. 그 작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3. 투고 내용은 학회지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0조 (투고 접수 및 통지)

1. 투고 원고는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2. 접수일은 해당 원고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3. 투고자는 위원회에 투고 신청서와 원고 1부를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투고의 조건을 충족시킨 원고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1조 (투고 양식)

1. 위원회는 논문 투고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학회 공식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투고 양식의 변경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 12조 (논문 등의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심사료 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이외의 투고자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3. 논문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게재료 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는 논문인쇄분량이 00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당 초과게재료는 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경비를 본인이 부담 한다.

### 제 13조 (학회지 발간)

1. 본 학회지는 년 0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00월과 00월의 말일로 한다.
2. 투고 량이 많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발간할 수 있다.

### 제 14조 (동일저자 논문 게재 편수 제한)

매회 학회지별로 공저자를 기준으로 동일 투고자가 3개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 제 15조 (원고작성)

#### 1. 원고작성

- (1) 한글사용 우선으로 국한문 혼용한다(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한자 병기를 요망).
- (2) 원고는 그림, 표, 영문초록 등을 포함하여 논문집(B5) 0~00쪽 내외의 분량을 원칙으로 하며(최대 00 쪽), 홀수 쪽으로 끝나지 않도록 편집하여 제출한다.
- (3) 저자 성명 아래에 200~400단어의 영문요약을 넣는다.
- (4) 원고 본문에는 제목과 저자의 영문명도 함께 기입한다. 저자 성명 아래에 영문요약을 삽입한다.
- (5) 영문요약 하단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5단어 내외의 주제어(키워드)를 삽입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국문요약 하단에 국문 키워드를 삽입한다.
- (6) 외국어로 쓴 논문에는 1,000자 이상의 국문요약을 반드시 첨부한다.
- (7) 원고는 편집 및 교정 작업, 인쇄공정의 생략, 시간 절약, 정확도 등을 꾀하기 위하여 투고자가 직접 편집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 제출한다. 최초의 심사용 논문과 중간 심사용 논문(수정 논문)은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이때 성명, 소속, 감사의 글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최종 논문은 반드시 “한글2002”버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투고자 성명, 소속,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등을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일정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은 첫 쪽 아래 부분에 각주로 기재한다.

#### 2. 사용글자 및 표, 그림

- (1) 글자의 서체 및 크기 등은 3.편집세부사항을 따른다.
- (2) 그림, 표, 사진의 설명(캡션)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단, 영문기재가 곤란하거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한글이나 원어를 영문과 병기할 수 있다.
- (3) 그림 및 사진 폭의 크기는 한 단 또는 양단에 맞추는 것으로 한다.
- (4) 그림 및 사진번호와 설명(캡션)은 Fig.1 등의 순으로 기재하며, 그림 및 사진 아래 양쪽에 맞춤으로 위치시킨다.
- (5) 표의 번호와 설명(캡션)은 Tab.1 등의 순으로 기재하며, 표 위 양쪽 맞춤으로 위치시킨다.
- (6) 그림, 표, 사진 등은 본문(hwp파일)에 삽입해야 하며(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1>, <Fig.1> 등으로 기재한다.

#### 3. 편집방법

논문은 아래 (1) - (14)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1) 논문제목(영문 병기)은 국문제목을 맨 윗줄 중앙에 넣는다(신명조, 16p).
- (2) 소제목(국문)은 제목 다음 줄 중앙에 넣되 앞, 뒤에 ‘-’을 둔다(신명조, 12p).
- (3) 영문제목은 국문제목 다음 줄 중앙에 넣는다(신명조, 13p). 영문소제목은 영문제목 다음 줄 중앙에 넣되 앞, 뒤에 ‘-’을 둔다((신명조, 12p).
- (4) 저자 성명(영문 병기)은 논문제목에서 3cm 띄우고 중앙에 넣는다(중고딕, 10p).
- (5) 저자의 소속은 저자 성명 다음 줄 중앙에 ( ) 속에 넣는다(신명조, 9p).

- (6) 저자 기재방법은 공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주저자로 하며,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교신저자’임을 영문으로 명기하고 이메일 주소를 병기한다.
- (7) 영문요약은 저자 소속 아래에 넣는다(글자체 및 크기는 국문과 동일).
- (8) 키워드(5단어 내외)는 영문요약 아래 점선을 상하로 긋고 그 사이에 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
- (9) 본문은 가운데 구분 선이 없는 2단으로 작성하며, 그림 및 사진, 표는 1단 또는 2단의 가로 폭에 맞게 편집한다.
- (10)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 : 1, 절 : 1-1, 항 : (1)
- (11) 장 타이틀은 위, 아래 각각 1행씩 비우고, 절 타이틀은 위만 1행을 띄우고, 항 타이틀은 행을 비우지 않는다.
- (12)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신명조, 8p, 장평 95%). 주기에 있어서 인용문헌의 표시는 다음 항목과 순서로 한다.
- ① 인용문헌이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명, 도서명, 판차, 출판사, 출판지, 출판년도, 인용한 쪽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한국건축사』, 2판, 조선사, 서울, 1993, 54쪽  
 예) Edward & Smi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3rded., SNU Press, Seoul, 2005, P. 111
- ② 인용문헌이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저자명, 논문명, 정기간행물명, 권수, 호수, 발행년도, 인용한 쪽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이순신, 「영남루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11권, 15호, 1999, 160~165쪽  
 예) Mylrea F.D, *Architectural History*, Journal 모차, Vol. 35, No. 9, 1999, pp. 57~64
- ③ 인용문헌이 총서, 논집인 경우는 저자명, 논문명(편저명, 도서명, 판차, 권수), 출판사, 출판지, 출판년도, 인용한 쪽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이퇴계, 「도산서원건축」(이상민 편, 서원건축, 1판, 3권), 교육사, 부산, 1988, 552쪽
- (13)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영문으로 일괄 기재하며(신명조, 10p, 장평 90%), 참고문헌의 표시는 각주의 인용문헌 표기법에 준한다. 단, 영문 기재가 곤란하거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한글이나 원어를 영문과 병기할 수 있다.
- (14) 매 홀수 쪽 상단 쪽 어깨에 들어가는 논문제목(돋움, 9p, 장평유동)과 일련 쪽 번호(돋움, 9p, 장평 100%), 매 짝수 쪽 상단, 쪽 어깨에 ‘논문’, ‘자료’ 구분표시(돋움, 9p), 발행일자(중고딕 9p, 장평 90%)는 편집위원회에서 기입한다.

### 3. 편집세부사항

#### (1) 용지설정

용지종류	용지 방향	여 백 주 기(mm)							제책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B5(182x257)	보통	19	15	16	16	8	12	0	맞쪽

#### (2) 단수(본문)

단 개수	단 구분선	단 너비(mm)	단 간격(mm)	단 너비 동일하게
2	없음	84	10	

(3) 도입부분 글상자 규격(제목, 성명/영문초록)

크기	여 백					위 치			
	구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기준	가로	세로	그림 피함
178(가로) x임의(세로)	안여백	3	3	0	0	문단	가운데	0	자리 차지
	바깥여백	0	0	0	10				

(4)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구 분		글 자 모 양			문 단 모 양				
		글 꼴	장평 (%)	크기 (p)	여백 (좌/우)	여백 (상/하)	들여 쓰기	줄간격 (%)	정렬 방식
도 입 부 문	제 목	신명조	100	16	0	0	0	150	가운데
	소 제 목	신명조	100	12	0	0	0	150	가운데
	영문제목	신명조	100	13	0	0	0	150	가운데
	영문 소제목	신명조	100	12	0	0	0	150	가운데
	이 름	중고딕	100	10	0	0	0	150	가운데
	영문이름	중고딕	100	10	0	0	0	150	가운데
	소 속	신명조	100	9	0	0	0	150	가운데
	영문소속	신명조	100	9	0	0	0	150	가운데
	초록 타이틀	중고딕	100	11	0	0	0	150	가운데
	초록본문	신명조	90	10	0	0	10	140	흔 합
	주 제 어	신명조	100	10	0	0	0	150	흔 합
	키 워 드	신명조	90	10	0	0	0	150	흔 합
본 문	장 타이틀	중고딕	100	11	0	0	0	150	흔 합
	절 타이틀	중고딕	100	10	0	0	10	150	흔 합
	본 문	신명조	95	10	0	0	10	160	흔 합
	인 용 문	중고딕	95	9	10	10	0	140	흔 합
	표, 그림 캡션	중고딕	95	9	0	0	0	150	흔 합
	표 내 용	신명조	95	9	0	0	0	130	흔 합
	각 주	신명조	95	8	0	0	0	130	흔 합
	참고문헌 타이틀	중고딕	100	10	0	0	0	160	가운데
	참고문헌 본문	신명조	90	10	0	0	0	150	흔 합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